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8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안)**과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사업(안) 총 2건임.

[취득 재산 총괄표]

연번	사업명	소재지	토지		건물		비고
			필지	연면적	동	연면적	
합계			6	691. ⁴	1	1,576. ⁷³	
1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안)	가산동 144-1, 144-2	-	-	1	1,576. ⁷³	
2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안)	시흥동 917-7외 5필지	6	691. ⁴	-	-	

□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안) - 주차관리과

가. 목 적 : 2023. 11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던 가산동 생활권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건과 관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변경계획을 재심의를 받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6. 12. (공사기간 2025. 7.~2026. 12.)
- 위 치 : 가산동 144-1, 144-2 (가산동주민센터 옆)
- 대지면적 : 903.5㎡(273평) ※ 대지취득 : 2022년 공원녹지과
- 건립규모 : 지하2층, 연면적 1,576.73㎡, 주차면수 36
- 소요예산 : 9,166백만원(특교세 700, 구비 8,466)
※ 2025년 기확보 예산 : 6,404백만원

다. 추진계획

- 변경내용 : 사업비 58% 증가
- 실시설계 전후 비교

구 분	타당성조사 (2023년)	실시설계 (2025년)	증 감
연 면 적	1,366㎡	1,576㎡	증 210㎡(16%)
주 차 면 수	36	36	-
총 사 업 비	5,787백만원	9,166백만원	증 3,379백만원(58%)
비용산출방식	「市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략사업비 산출 → 연면적×평균단가×물가상승률	현장여건 고려한 변동규모, 물량 확정 등에 따른 현재 물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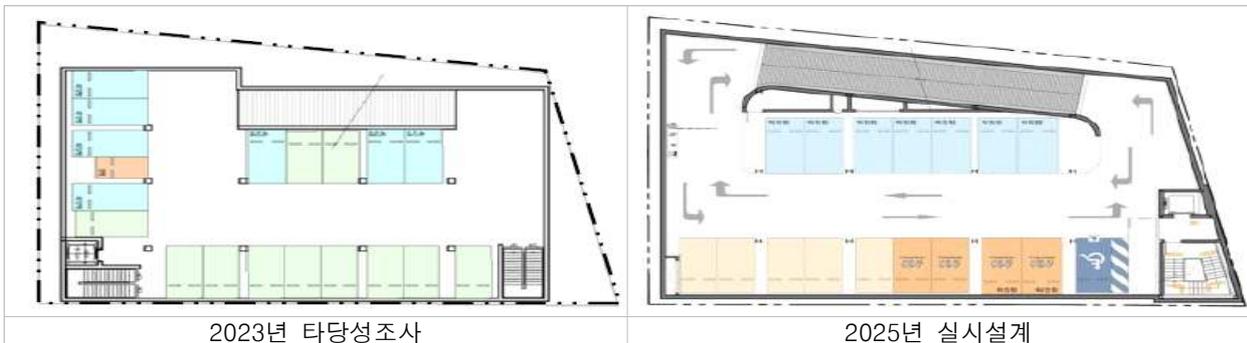
○ 주요사업비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타당성조사 (2023년)	실시설계 (2025년)	증감비용	증감률	비고
합계	5,787	9,166	증 3,379	58%	
①공사비	4,920	7,695	증 2,915	66%	건물연면적 210㎡(16%) 증가
토목	1,984	3,720	증 1,736	87%	○ 안전 관련, 흙막이벽, 구조보강, 복공규모 확대 / 건물면적 증가 ○ 안전가설물 상향, 주변도로 배수, 포장공 추가
건축	2,204	2,563	증 359	16%	상부공원 시설물 하중 증가로 골조단면 증가, 공원상부 지상시설 추가
기계	164	174	증 10	6%	
소방	199	351	증 152	76%	동파방지 열선 추가, 공과잡비 19%증가
전기	136	354	증 218	161%	냉난방설비, 배수급배기, 트레이, 스노우 멜팅 추가
통신	93	328	증 235	252%	주차유도관제 추가 및 CCTV 사양 증가
철거,계측,이설	140	205	증 65	46%	계측비, 이설비 추가
②설계비	333	339	증 6	1.8%	
③감리비	496	1,039	증 543	110%	총공사비에 요율(10%) 일률 적용 → 실제 배치인력 기준 적용
④부대비 (용역, 인증 등)	38	93	증 55	144%	

주요 증액사유

1) 연면적 210㎡(16%) 증가에 의한 공사물량 확대



2) 건설공사 가격 상승

- * '22.3. ~ '25.2.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 8.25%
- * 「市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단위면적당 공사비 : '22년 기준 대비 '24년 14.9% 상승

3) 구조보강 및 기타 안전설비 추가 등

- 토목공사비 증가 규모 최대(1,736백만원, 총 증가액의 51%)
 - 연면적 증가에 따른 토공 등 전반 물량 확대
 - 인접지반 변위 및 붕괴 등 방지를 위한 흙막이구조벽 보강 및 안전가설물 상향 등
- 상부공원 조성 관련 비용 증가 : 하중 증가에 따른 골조 보강, 지상시설 추가 등
- 안전 시공비 추가 : 계측관리(지반침하 등), 동파방지열선, 자동화재탐지 등
- 기타 부속설비 추가 : 램프 열선, 주차유도관제, 고사양 CCTV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 실제 투입인력 기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

라. 향후 추진일정

- 2023. 10월 : 기본계획 수립, 구 투자심사
- 2024. 2월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 중복결정 고시
- 2024. 3월 : 기존건물(세차장) 철거
- 2024. 7월 : 가산생활문화센터 철거
- 2024. 9월 :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운영
- 2025. 5월 : 구 재투자심사
- 2025. 6월 :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 2025. 6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5. 7월 : 건설공사 착공
- 2026. 12월 : 건설공사 준공
- 2027. 1월 : 공영주차장 운영

마.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바. 예산조치

- 2025년 : 2026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 2,762백만원 편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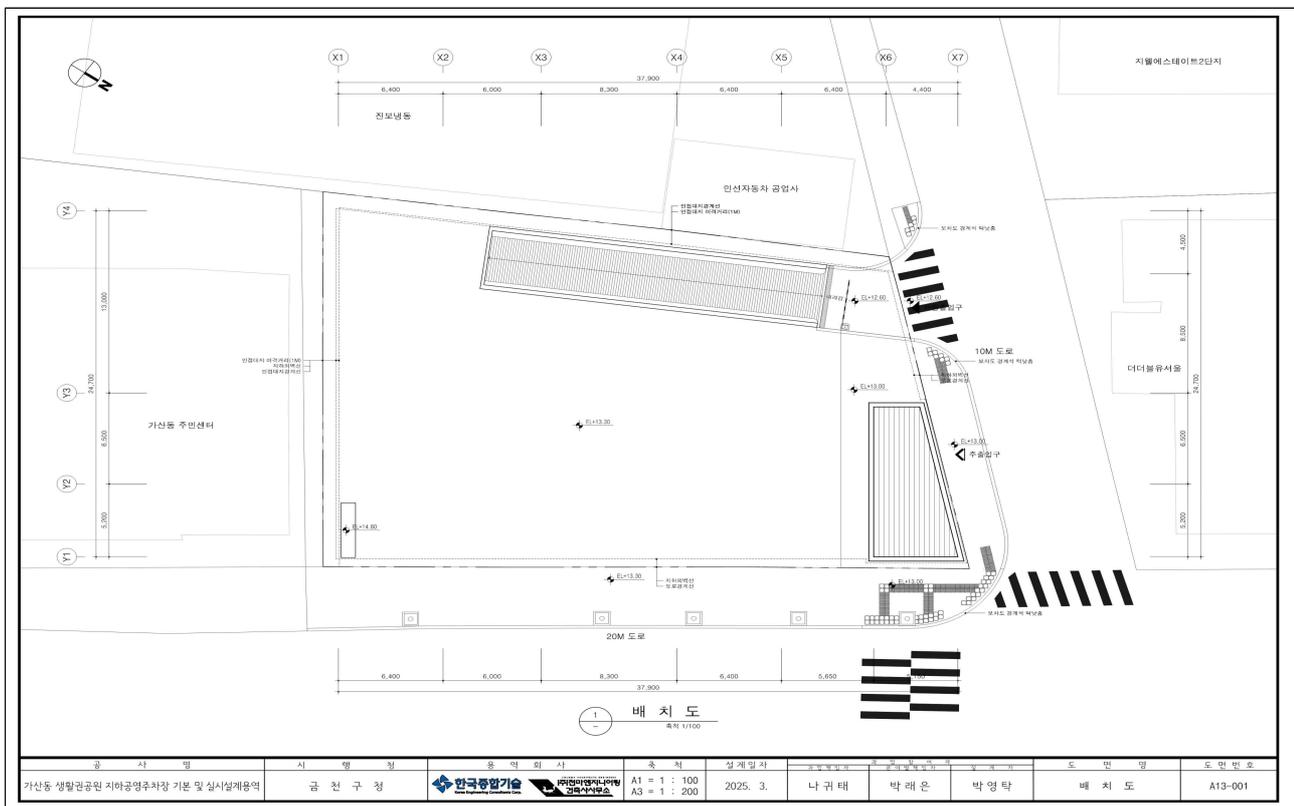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소요자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9,166	6,404	2,762	-	
특교세	700	700	-	-	
구비	8,466	5,704	2,7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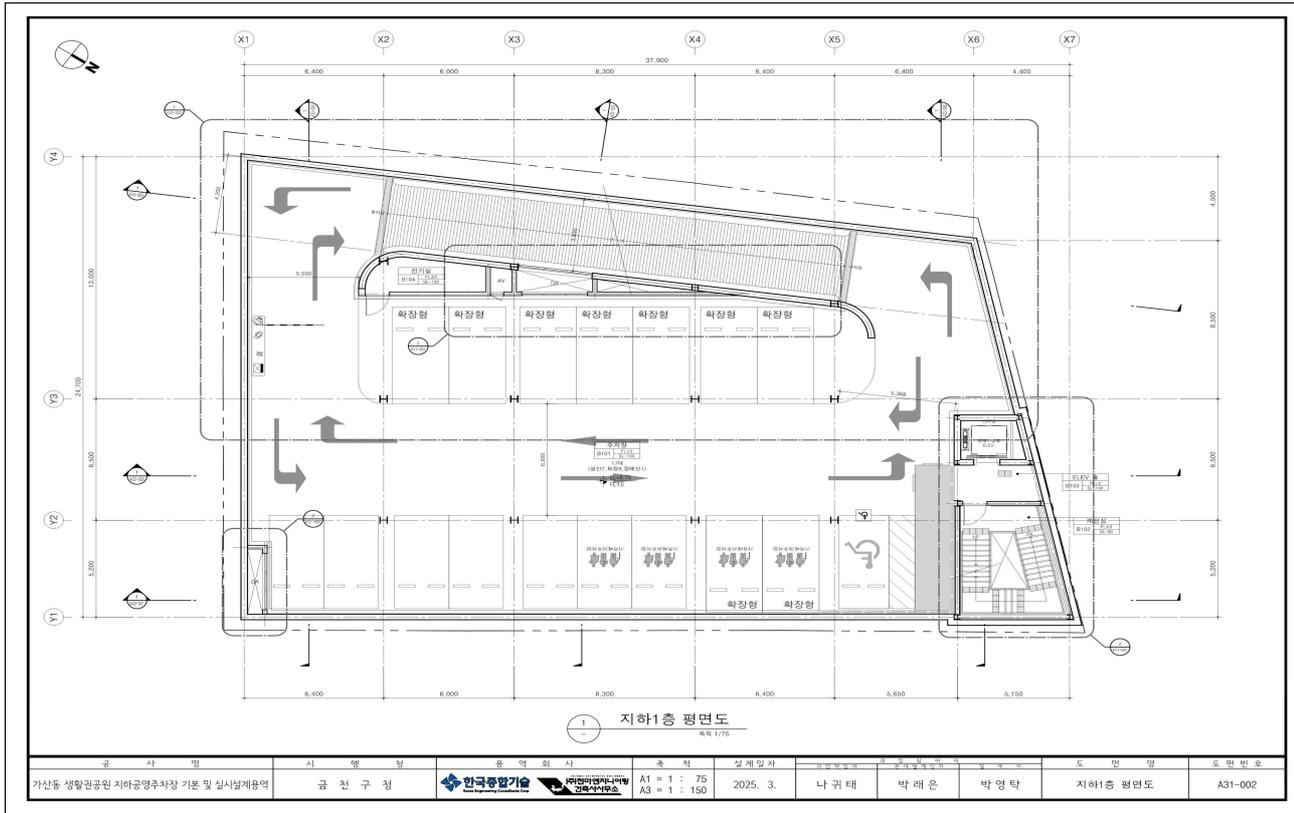
설계개요

설계개요 및 면적개요		S = NONE					
■ 설계개요							
구분	항목	내용					
대지개요	공사명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4-2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903.50 m ²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 주차장,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합조구역					
건물개요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건축면적	37.83 m ²					
	건폐율	4.19 % (37.83 / 903.50)					
	용적률	6.91 % (62.46 / 903.50)					
	면적	1,576.73 m ² (62.46m ² - 용적률 산정)					
	구조	철골구조					
	층수	지상2층, 지하2층					
	정화조	-					
주차대수	36면 (장애인주차 1면 포함)						
■ 면적개요							
구분	층별	용도	면적	주차면수	건축면적	비고	
층별개요	지상 1층	계단실	31.23				
		계단실	31.23				
	지상 2층	소계	62.46			37.83	
		주차장	771.93	17 면			
	지하 1층	주차장	742.34	19 면			
		소계	1,514.27				
합계	소계	1,576.73	36 면		37.83		
■ 주차대수							
층	지하2층	지하1층					
일반형	8	7(가족:2면)					
확장형	7	9(가족:2면)					
장애인	-	1					
경형	1	-					
환경친화적	3	-					
소계	19	17					
합계	36						
■ 대지면적							
번호	지번	면적 (m ²)					
1	144-1 대	156.70					
2	144-2 대	746.80					
합계		903.50					
공사명	시행장	용역회사	축척	설계일자	도면명	도면번호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금천구청	한국종합기술	A1 = NONE A3 = NONE	2025. 3.	설계개요 및 면적개요	A1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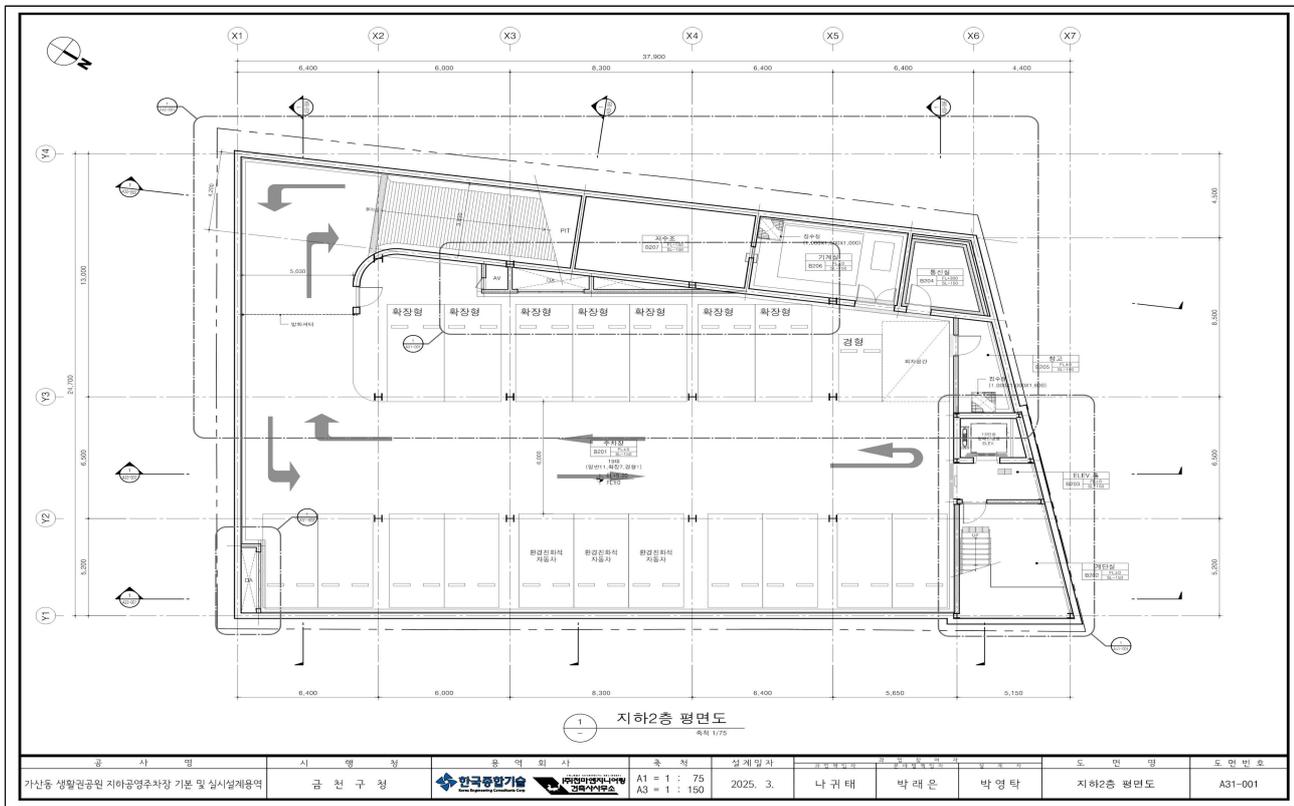
배치도



□ 지하1층 평면도



□ 지하2층 평면도



위치도



현장사진



□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사업(안) - 주차관리과

가. 목 적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시흥5동
 별장길 주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설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9. ~ 2026. 12.
- 위 치 : 시흥5동 917-5외 7필지
- 대지면적 : 1,523.2㎡(기존 831.8 + 매입 691.4)
- 사업내용 : 現지평식주차장과 연접한 6필지(691.4㎡) 협의매입 후 주차장 확대

※ 現지평식 공영주차장 현황

위 치	토지면적	주차면수	준공연도	지역 · 지구	소유주	주변현황
시흥5동 917-5, 17	831.8㎡ (251평)	33	1999	제2종일반주거지 역, 주차장	917-5 (서울시) 917-17(금천구)	별장길, 시흥5동청사

- 주차면수 : 57면(기존 33 + 증설 24)
- 소요예산 : 5,791,249천원 【사비 3,228,554(55.7%), 구비 2,562,695(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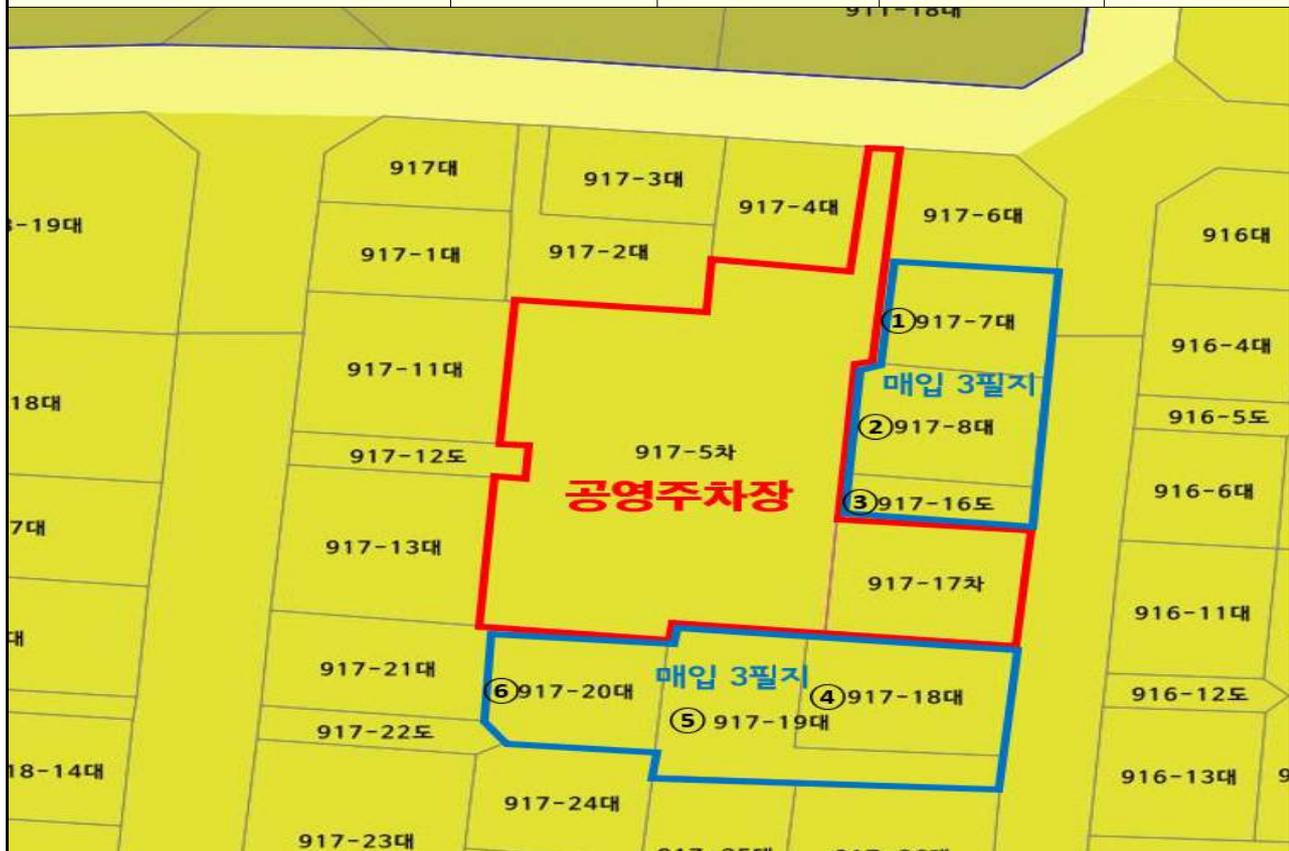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계	부동산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경비
5,791,248	4,798,141	44,000	883,600	22,000	43,507

다. 추진계획

○ 부동산 매입계획

연번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감정평가금액	비고
1	시흥동 917-7	대	105.0	119.99	731,778	건물가 포함
2	시흥동 917-8	대	122.6	179.82	879,907	건물가 포함
3	시흥동 917-16	도로	49.5	-	231,908	-
4	시흥동 917-18	대	138.9	209.82	1,015,986	건물가 포함
5	시흥동 917-19	대	161.9	254.92	1,149,044	건물가 포함
6	시흥동 917-20	대	113.5	169.38	789,518	건물가 포함
계			691.4	933.93	4,798,141	-



○ 주차장 조성공사 계획

(단위 : 천원)

소재지	규모	공사내용	소요예산	비고
시흥동 917-5 외 7필지	토지 1,523.2㎡ 단독주택 933㎡	건물철거, 바닥포장, 담장공사 등	993,107	설계·감리비 포함

다. 향후 추진일정

- 2024. 9월 : 매입대상지 1차 부동산매매동의서 징구
- 2025. 2월 : 매입대상지 감정평가 실시
- 2025. 3월 : 매입대상지 2차 부동산매매동의서(감정평가금액 표시) 징구
- 2025. 4월 : 「2025년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신규사업 신청
- 2025. 5월 :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구 투자심사
- 2025. 6월 :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 2025. 9월 : 2026년 예산편성안 제출
- 2026. 1월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2026. 7월 : 기존주택 거주자 이전 완료 및 부동산 소유권 확보
- 2026. 8월 : 기존주택 해체 및 주차장 조성공사 (~ 2026. 12월)
- 2027. 1월 : 주차장 운영(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라.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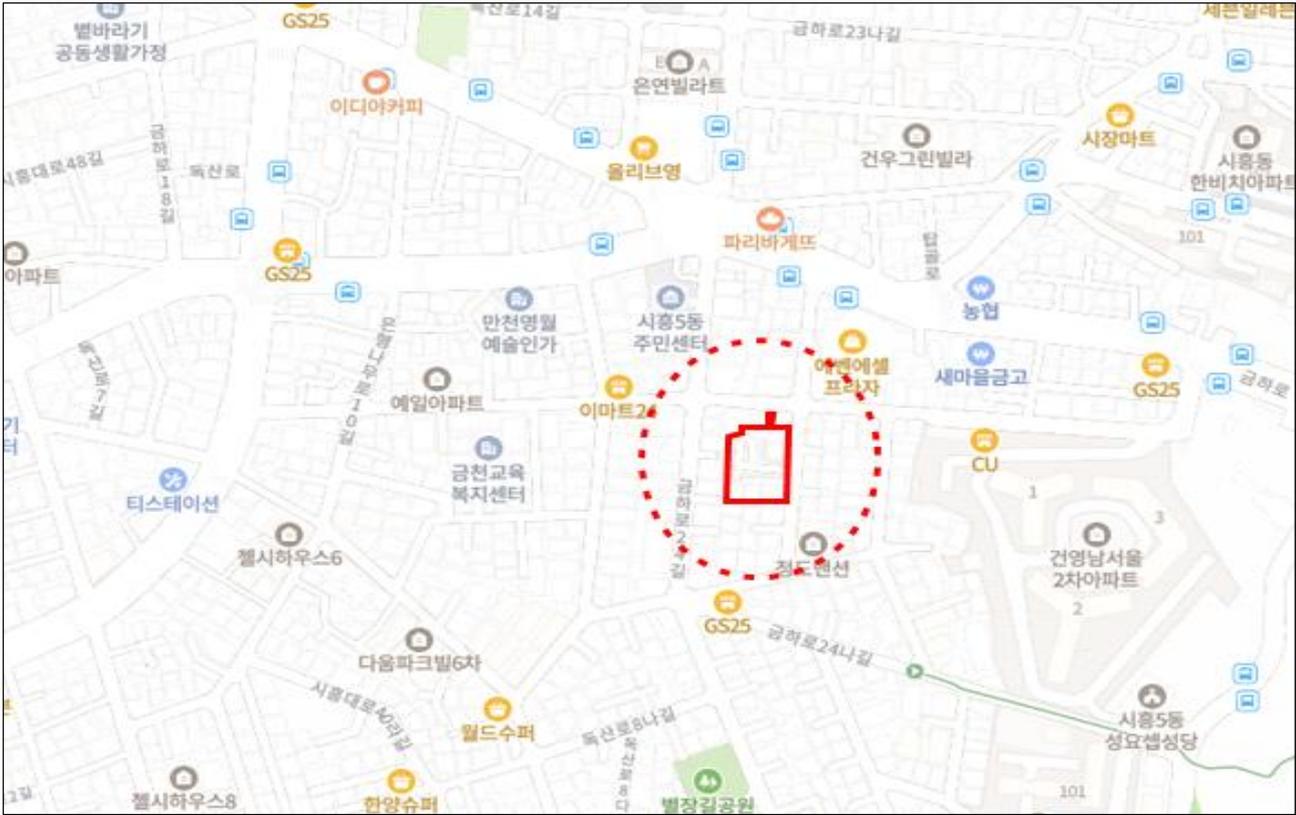
마. 예산조치

- 2026년 : 총 사업비 5,791백만원 본예산 반영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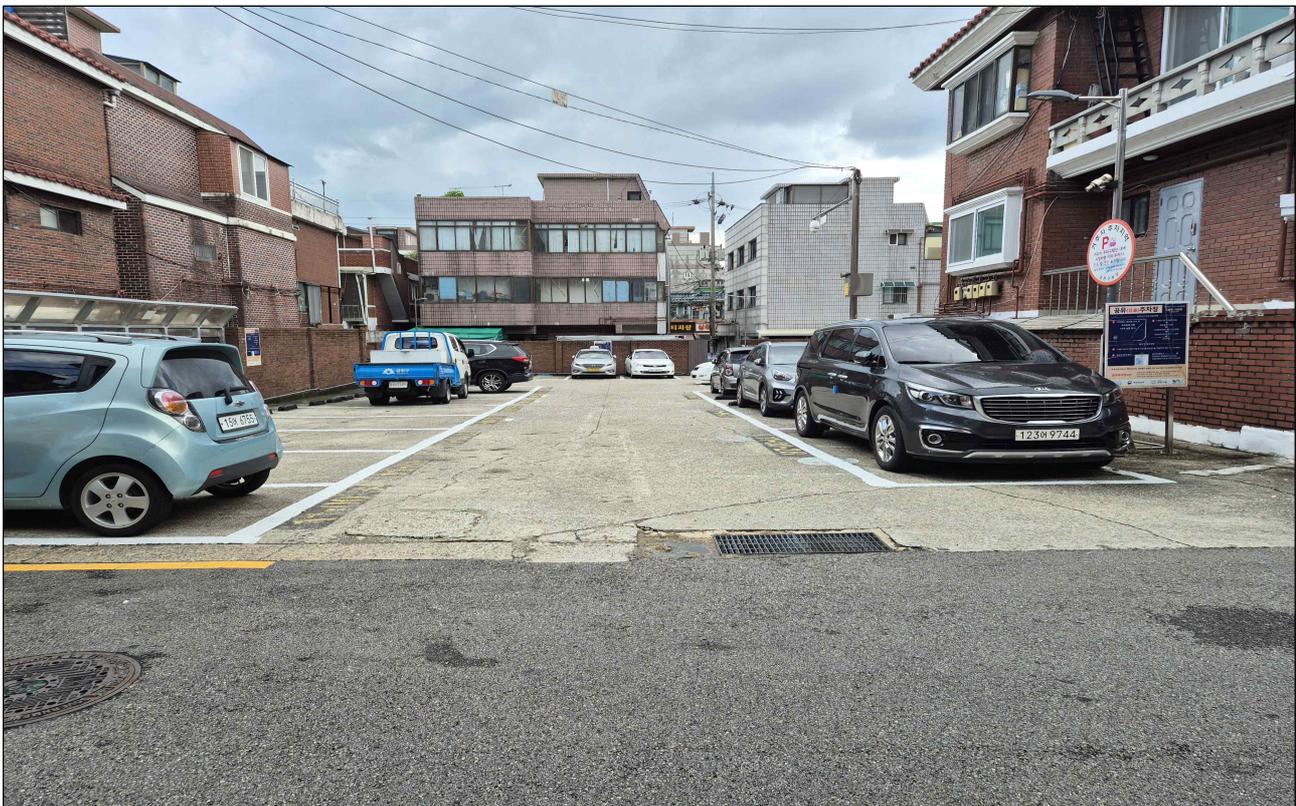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소요재원			비 고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5,791	-	5,791	-	
시 비	3,228	-	3,228	-	
구비	2,563	-	2,563	-	

위치도



현장사진



4. 관계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이 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며,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안)과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사업(안)건임.
-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건은 2023년 11월 제 247회 정례회 시 가결된 안건으로 금년 실시설계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변경계획을 재심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비 증가 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사업(안)건은 시흥5동 주민센터 근처 기존 공영주차장과 연접한 도로부지를 포함한 6필지를 협의 매입후 주차장을 확대하여 기존 주차면수 33면에서 증설 24면을 확보하여 57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 300M 반경 내 주차장확보율은 60% 미만으로 주차 여건이 열악하며, 증설 1면당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건물보상비 및 경비를 제외한 시비 60%를 지원 받음.
- 두 사업 모두 필요성은 있으나,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의 경우 2023년 당시 실시설계 이전 단계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금번 변경안에서 사업비가 33억7,900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
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
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
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5. 5.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622호, 2025. 5. 1.,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31., 2015.10.8., 2022.10.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22.10.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신설 2022.10.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